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64호 2022. 1. 12.(수요일)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76호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의 세부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3
- 하동군 훈령 제377호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4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2-6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허가 고시(안0안)..... 5
- 하동군 고시 제2022-7호 홍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6
- 하동군 고시 제2022-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7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2-1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하동군 공고 제2022-58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9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2-3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34
- 하동군 공고 제2022-31호 동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57
- 하동군 공고 제2022-33호 지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58
- 하동군 공고 제2022-48호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9

회									
람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의 세무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2022년 1월 12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76 호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의 세무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본청·직속기관의 세무 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를 “제4조, 제6조의2, 제9조”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2022년 1월 12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훈령 제 377 호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보좌·보조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제 2022 - 6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를 고시합니다.

- 아 래 -

점용자	주 소	하천 명칭	점용위치	점용면 적	점용목적	유효기간
안*안	하동읍 산복1길 113	섬진강	고전면 전도리 1296-1	162㎡	계류장(바지선)	2021. 12. 31. ~2024. 12. 30.

2022년 1월 6일

하 동 군 수

흥룡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22-7호

하수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22. 01. 07.

하 동 군 수

1. 공공하수도 현황

○ 기본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 (m ³ /일)	처리공법	처리구역 (ha)	배제방식	사용개시일
흥룡 소규모공공 하수처리시설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088	50	JSBR 공법	19.5	분류식	22.01.07.

○ 방류수질

(단위 : mg/L)

처리장	구 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흥룡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 계 수 질	10	25	10.0	20.0	2.0	3,000이하
	방 류 수 질	1.4	1.5	1.5	1.8	0.3	0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흥룡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 섬진강 하류

2. 사용개시(공고)일

- 2022. 01. 07.

3. 기타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055-88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하동군 제202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1. 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2-1호
2. 허가연월일 : 2022. 1. 07.
3. 점·사용의 목적 : 공익사업을 위한 지반조사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609-5번지, 1610번지, 54㎡
5. 점·사용의 기간 : 2022. 01. 10. ~ 2022. 01. 24.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주)다룸***

하동군 공고 제 2022-10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넷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이 동일하여 다섯째아이 이상 특별 축하금 지급
-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3. 주요 내용

○ 다섯째아이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 다섯째아이 500만원, 출생순위 증가에 따라 500만원 씩 추가 지급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자 1.5% 이자(최대 1백만원 한도)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최장 3년간 지원(조건 부합 시)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월 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842, FAX 880-215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 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항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 5.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표 5로하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첫째아이 440만원 ·둘째아이 1,100만원 ·셋째아이 1,700만원 ·넷째아이 이상 3,000만원 (단, 첫째아이는 월10만원씩 만2세까지 지급, 둘째아이는 월1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셋째아이는 월2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 넷째아이 이상은 월45만원씩 만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돌축하금을 지급하며(첫째~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원)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시 로 한다.)
2. 출산축하용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3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3.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제1호의 지원대상과 동일함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이상 200만원 다섯째아이 500만원 출생순위 증가에 따라 500만원 씩 추가 지급(단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4. 다둥이 안전보험	가. 둘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2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2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월 3만원 이내 (단, 보험심사 후 가입 결정)
5. 영유아 양육수당	가. 셋째아이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나. 부모와 3명 이상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둔 사람	만 6세미만 취학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월 10만원
6. 임신부 철분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로 등록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	6개월분 철분제
7. 태아염색체 검사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한 임신부 중에서 태아의 유전성질환, 태아의 염색체이상 의심 등으로 태아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에 따라 태아 염색체검사를 실시한 임신부	60만원 이내

[별표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2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p>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p>	<p>가.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하동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구입,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및 세대원 소유의 다른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이 없어야 함 · 대상주택 :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p>나. 지원제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주택 거주자 ·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최대 1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 : 연1회, 대상자별 1회에 한함. · 지원기간 : 최장 3년

[별표 5]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별 소관부서 현황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시 책 명	소관부서	비고
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행 정 과	
	출산축하용품	행 정 과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행 정 과	
	다둥이 안전보험	행 정 과	
	영유아 양육수당	행 정 과	
	임산부 철분제	건강관리과	
	태아 염색체 검사비	건강관리과	
전입지원	전입자 지원금	행 정 과	
	전입학생 지원금	행 정 과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행 정 과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행 정 과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문화체육과	
	전입자 팸투어	관광진흥과	
	결혼식장 무료 대여	문화체육과	
	영농정착 보조금	농촌진흥과	
	영농기초기술교육	농촌진흥과	
	빈집정보 제공	도시건축과	
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금	행 정 과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행 정 과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

(앞면)

신분 청야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입 지원 <input type="checkbox"/> 결혼장려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	주 소	경남 하동군 읍·면				
	성 명		생년월일		성별(남, 여)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계번 잘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출산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 명		생년월일			
	출생일자		출생순위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checkbox"/> 출산장려금 <input type="checkbox"/> 태아염색체 검사비 <input type="checkbox"/> 출산축하용품 <input type="checkbox"/> 다둥이 안전보험 <input type="checkbox"/> 쌍둥이 이상 등 출산 축하금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철분제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다둥이 안전보험」은 동 보험사 및 타 보험사에 기 가입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입 지원	전 입 자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전입일자
	<input type="checkbox"/> 전입자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전입자 뺨투어 <input type="checkbox"/> 전입학생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식장 무료 대여 <input type="checkbox"/>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영농정착 보조금(□영농 □자재구입) <input type="checkbox"/> 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영농기초기술교육 <input type="checkbox"/>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빈집정보 제공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결혼 장려 지원	* 뒷면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 기재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읍·면장 (인)						

(뒷면)

세 부 신 청 사 항				
결혼 장려 지원	대상자의 성명(夫)		생년월일	
	대상자의 성명(婦)		생년월일	
	혼인일자		전입일자 (다문화가정인 경우, 주민등록일자)	대상자(남편) : 대상자(처) :
	<다문화 가정인 경우, 확인사항> 우리군의 동종 사업 보조사업 수혜여부 접수읍면에서 소관부서에 직접 확인		<input type="checkbox"/> 수혜사실(년도) 있음. <input type="checkbox"/> 수혜사실 없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잘 읽어 보시고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인구증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별지 제3호서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일		휴대전화	
	전거주지 주택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input type="checkbox"/> 임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현 택 황	소 재 지		소유자	
	구 분	<input type="checkbox"/> 구입(신축) <input type="checkbox"/> 임차		
	금 액	원	면적	m ²
대출현황	대 출 기 관	대 출 금 액	원	
		대 출 잔 액	원	
	대 출 조 건	연 대 출 이 자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신 청 금 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3.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뒷면>

1.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 및 동의서

1.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		본인자필명 서
1.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년 월 일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다른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은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음.	
3.주거자금 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4.대상 주택 거주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남해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2.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신청 자격에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서약·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인구증대시책 지원 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신설></p> <p>② 인구증대시책 업무의 소관부서는 <u>별표 4</u>와 같다.</p>	<p>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①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3호서식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약서 및 동의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u></p> <p>② ----- <u>별표 5</u>-----.</p>

하동군 공고 제 2022-58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제안이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국내·외 투자기업의 조기 분양 완료 및 기반 조성을 위함.
 - 상위 법 및 경남도 자치법규와 상이한 부분 해소
 - 경남도 신규 지원 사항(신·증설 기업 지원) 등 반영
 - 대송산업단지 첫 입주기업의 지원 방향 설정 및 대송산업단지 설정에 맞는 지원방안 규정
3. 주요내용
 - 설비투자금액, 투자계획, 사후관리기간 정의 신설
 -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도 융자금’과 ‘군 지원사항’ 중복지원 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반영
 - 신설사항 반영 : 신·증설 기업 지원사항
 - 기타 지원사항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 등 반영
 - 군 자체 지원사항에 대한 연구개발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
 - 투자유치자문관, 컨설팅업체(전문 분양대행사 등)의 선정을 위한 규정 신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월 19일까지 하동군(참조 : 투자유치단, 전화880-7113, FAX 880-711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이란 군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이전보조금”이란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7.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나. 같은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회계처리 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않을 수 있다.
8.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9.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
10.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3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11.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별지 서식 제8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12.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하동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및 협의회)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 및 투자유치협의회위원(이하 “협의회위원”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관련 분야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계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중앙 및 도의 투자유치전문 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등 그 밖의 경비

⑤ 군수는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이 위촉 해제를 요청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⑥ 자문관 및 협의회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기금용자 대상 등) ①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대송산업단지의 준공 전 분양계약하는 기업에 한하여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있다.

1. 용자대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의 갈사산업단지 및 대송산업단지에 한하여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2. 용자대상 업종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3. 용자한도는 공장시설 등 부지 매입금액의 60퍼센트 이내에서 100억원
4.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장부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 등 부지 매입을 위하여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계약 및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② 기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을 따른다.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0조에 따라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절차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입지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4조 및 제2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기업당 3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2개월의 기간에서 10명을 초과한 1명 당 월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

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20억원(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해당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지원)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비용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에 한정하되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계획된 투자금액이 100분의 10이상의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업확정 후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계약금액 중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예산평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건설부분의 기본조사설계비의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 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지정지구 내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16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5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입지보조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율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상 경영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시설 등록에 따른 사업개시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신·증설 기업 지원)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증설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것
2.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6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36점) 이상일 것. 단,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며, 기업 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도의 기업의 본점 등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본점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략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24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군의 전략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사업장 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100실 이상의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2.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성화업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5. 그 밖에 시설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또는 연구소·연구개발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

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제9조를 준용하고 시설보조금의 지원은 10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시설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은 각각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분양계약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시설보조금의 경우 착공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시설 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증설한 경우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주기업의 요청 시 입지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특성화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첨단업종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²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입지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단, 대송산업단지 준공 이전 입주기업에 한해서는 착공 시 지원금액 결정액 중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4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군내인력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군내인력 고용보조금은 신규투자로 공장을 신설한 경우로서 공장등록날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주민등록상 군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에서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10명 이내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이전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4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4의2와 같이 하며,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

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기반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날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내역
- 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등

③ 조례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및 군도 일 것
- 2. 상·하수도시설: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
- 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 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 5. 지역난방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 6. 통신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 7.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본시설과 기능시설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3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부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제한)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과 입지지원의 경우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계획 금액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서 제출 시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4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2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35조제1항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지지원 또는 시설지원을 받아 공장시설 등을 등록한 후 제2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 나. 매입한 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 다.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분양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3.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4.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어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5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26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의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제1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9조(융자금의 상환) ①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3년 균등 배분하여 상환한다.

②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융자금 조기상환명령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대출 상환의 연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더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해야 할 연체이자 또는 기업자금 평균금리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서 부담한다.

⑤ 규칙 제28조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제1항제5호, 제1항제6호, 제1항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제30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등)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 기업 또는 자본의 유치금액이 건당 5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초 투자날부터 5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희망보직 배치,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원기준은 별표를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투자유치자문관, 컨설팅업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유치 성과급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소산업의 해당여부를 수소관련 전문가 단체·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② 조례 제30조제3항의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별표 2와 같고, 수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시 기업이 투자한 토지구입비 인정액은 토지구입비 이외의 투자인정액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투자유치 포상 기준

구 분	기 준				
포상대상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포상종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포상금 산정액 (①)	유치구분	투자규모	성 과 금	상한액	
	투자금액 (민간인, 기관단체)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1(0.1%)	1,0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 0.0004(0.04%) + 1,000만원	2,60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 0.0003(0.03%) + 2,600만원	4,10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 × 0.0002(0.02%) + 4,100만원	2억원	
	투자금액 (공무원)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05(0.05%)	5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 0.00004(0.004%)	1,60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 0.00003(0.003%) + 500만원	2,00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 × 0.00002(0.002%) - 5,900만원	1억원	
	포상금 적용율 (②)	적용율	적 용 대 상		
		10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주관부서로 이관 추진			
비 고	○포상금 지급액 = 산정액(× 적용율(③))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 ○외국인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 ○모든 포상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별표 2]

수소산업 투자 규모별 보조금 지원한도

투자규모 (투자인정액-10억)	지 원 한 도
25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 100억원 이하
150억원 이상 ~ 2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별표 3]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

구분	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 구입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4]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① 최근 2~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2~3년간 매출액 증가율	점 수	최근 2~3년간 매출액 증가율	점 수
35% 이상	5	5% 이상 ~ 15% 미만	2
25% 이상 ~ 35% 미만	4	5% 미만	1
15% 이상 ~ 25% 미만	3		

-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매출액 증가율} \times 1)}{3}$
- * 당기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 전기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전기 매출액} - \text{전전기 매출액}}{\text{전전기 매출액}} \times 100$
- ※ 영업 3년 미만의 기업은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② 최근 2~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최근 2~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점 수	최근 2~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점 수
35% 이상	5	5% 이상 ~ 15% 미만	2
25% 이상 ~ 35% 미만	4	5% 미만	1
15% 이상 ~ 25% 미만	3		

- *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 $\frac{(\text{당기 영업이익 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영업이익 증가율} \times 1)}{3}$
- * 당기 영업이익 증가율 = $\frac{\text{당기 영업이익} - \text{전기 영업이익}}{|\text{전기 영업이익}|} \times 100$
- * 전기 영업이익 증가율 = $\frac{\text{전기 영업이익} - \text{전전기 영업이익}}{|\text{전전기 영업이익}|} \times 100$
- ※ 영업 3년 미만의 기업은 2년간 영업이익 증가율(당기 영업이익 증가율)로 산정
-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③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20명 이상 30명 미만	4
40명 이상 50명 미만	8	10명 이상 20명 미만	2
30명 이상 40명 미만	6		

④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대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5 이자보상배율

최근 2~3년 이자보상배율	점 수	최근 2~3년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1 이상 ~ 2 미만	4
3 이상 ~ 4 미만	8	1 미만	2
2 이상 ~ 3 미만	6		

* 최근 3년 이자보상배율

$$= \frac{(\text{직전1년 이자보상배율} \times 3) + (\text{직전2년도 } \text{〃} \times 2) + (\text{직전3년도 } \text{〃} \times 1)}{6}$$

* 최근 2년 이자보상배율(영업 3년미만 기업)

$$= \frac{(\text{직전1년 이자보상배율} \times 2) + (\text{직전2년도 } \text{〃} \times 1)}{3}$$

*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frac{\text{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text{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6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7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 수	사업성	점 수
20% < (IRR-할인률)	5	5% < (IRR-할인률) ≤ 10%	2
15% < (IRR-할인률) ≤ 20%	4	(IRR-할인률) ≤ 5%	1
10% < (IRR-할인률) ≤ 15%	3		

8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2.5년 이내	2
1.5년 이내	4	3년 이내	1
2년 이내	3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
 *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기산

9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10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여부 : 2점

[별표 4의2]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마지역비율 적용	비고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투자금액 ×5%	30	투자금액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투자금액 ×7%	56	투자금액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투자금액 ×10%	100	

[별표 5]

보조금 환수 기준

구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규칙 제30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4호, 제9호)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규칙 제30조제1항제6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동군수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규칙 제30조제1항제7호) <p>(1) 원칙 :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 사후관리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 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환수액 = 보조금 × (1 - 평균달성률)</p> <p>*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 달성률의 합 / 사업이행기간</p> <p>* 고용인원달성률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p> </div> <p>※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② 별표5에 따른 정산시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상 고용 목표’ 미달시 : ‘정산시점 상시고용인원’ <p>※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p> <p>(2) 예외(미환수) : ① 정산 시 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 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 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 내 휴·폐업(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 사업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별표 6]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①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평균매출액	점 수
100억원 이상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	30억원 미만	4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12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②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 상시고용인원	점수
30명 이상	20

③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CCC- 이상	8
BB- 이상	16	CCC-미만	4
B0 이상	12		

※ 용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대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④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20	1 이상 ~ 2 미만	8
3 이상 ~ 4 미만	16	1 미만	4
2 이상 ~ 3 미만	12		

* 이자보상배율 = $\frac{\text{기업의 영업 이익액}}{\text{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⑤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20억원당 2점

⑥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5년 이내	10	2.5년 이내	6
2년 이내	8	3년 이내	4

⑦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점수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1명당 0.5점

※ 30명 이상 추가 신규고용 인원이 경상남도 출생지를 둔 청년 신규고용인 경우 1명당 0.5점 추가 가점부여
 -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세~34세를 의미

⑧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별표 7]

신설·증설기업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신설·증설 기업지원	설비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 10%	10	설비투자금액 1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1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2명 이상		15	설비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5명 이상		20	설비투자금액 25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25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38명 이상		25	설비투자금액 300억원 미만 해당
	설비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40명 이상		30	

[별표 8]

기금 용자 타당성 평가표

① 최근 1년이상 ~ 3년미만 평균매출액

평균매출액		점 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5
7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2
50억원 이상 75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9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6
30억원 미만	15억원 미만	3

* 최근 3년미만 사업실적의 평균매출
(직전1년도매출액 + 직전2년도 매출액) ÷ 2(단, 사업기간이 1년인 기업은 직전1년도 매출액)

②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일 반	연구소·연구개발업· ICT기업·사회적기업	
25명 이상	20명 이상	15
20명 이상 25명 미만	15명 이상 20명 미만	12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9
10명 이상 1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6
5명 이상 10명 미만	5명 미만	3

년·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년·월								
상시고용인원								

③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점수
BBB- 이상	20
BB- 이상	16
B0 이상	12
CCC- 이상	8
CCC-미만	4

※ 용자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4]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20
3 이상 ~ 4 미만	16
2 이상 ~ 3 미만	12
1 이상 ~ 2 미만	8
1 미만	4

* 이자보상배율 = $\frac{\text{기업의 영업 이익액}}{\text{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5]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1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 연구소·연구개발업·ICT기업·사회적기업은 2억원당 1점

6] 투자기간

신청일로부터 투자완료일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7]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신규고용	가점(10점 상한)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신청당시 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8] 성장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

[뒷 면]

보조(융자)금액	보조금(융자금) 총액		도비 분담금		시·군비 분담금	
	계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산출식					
		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기타()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있음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고용인센티브(%p)

기 지원사항	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총액	천원
			국비	천원
			도비	천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 동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신설·증설 기업 지원,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협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협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소(법인소재지)		전 화 번 호		
			F A X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 <input type="checkbox"/> 주 택 <input type="checkbox"/> 지원시설				
	소 재 지				
	면 적	부 지	건 축 물		
			m ²	m ²	
	건 물 구 조				
건축허가일		준공일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축 <input type="checkbox"/> 기존건물 매입				
투자금액	금 원 (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원	주택 :	원	지원시설 :	원
<p>「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p>					
하 동 군 수 귀 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학 교 명 (국 적)		설립자 성명 (국 적)	
학교장 성명 (국 적)		본국 학력인정 여부	
소 재 지			
설립년월일		설립인가번호	
학 생 수	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교 사 수	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보조금 신청액	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 동 군 수 귀 하

※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별지 제4호서식]

군내 인력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청 기업	상호(대표자명)			
	주소 및 위치			
	연락처	전화 :	팩스 :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업 종	
	보조금신청 횟수	회	신규 투자규모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월평균인원	
	지원 신청인원 (신청일 직전 3개월 연속 근무인원)	총 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액	보조금	총금액 :	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내 인력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 / 여) (인) 하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 1부 2.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조회 신청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FAX)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이전 전		업종 (분류번호)	이전 전	
	이전 후			이전 후	
이전(투자)공장 규모					
부지면적(m ²)	제조시설면적(m ²)	부대시설면적(m ²)	공장가동개시일	종업원수	
기반시설 투자내역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량	투자금액(천원)		
<p>「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청 인 (남 / 여) (서명 또는 인)</p>					
<p>하동군수 귀하</p>					
<p>구비서류</p> <p>1. 해당 기반시설의 설계서 및 준공내역 1부</p> <p>2. 투자사업비 내역 및 투자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1부</p>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input type="checkbox"/>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부지매입비 융자금 <input type="checkbox"/> 도외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input type="checkbox"/> 본점 이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수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 <input type="checkbox"/>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구분		투자계획 기준	정산기준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신규 고용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일부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사유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투자유치 성공포상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	소속(주소)			직 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전화	FAX		
투자유치 내 역	투자자명			국 적	
	기 업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업 종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설	<input type="checkbox"/> 이 전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단 독	<input type="checkbox"/> 합 작 ()%		
	공장규모	부지	m ² ,	건물	m ²
	종업원수	명(사업개시일 기준)			
	투자금액	원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에 따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남 / 여) (인)

하동군수 귀하

수수료
없 음

구 비 서 류

1. 유치 공적 기술서
2. 사업(이전 또는 신설)계획서
3.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투자유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양해각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

[별지 제8호서식]

사 업 (투 자) 계 획 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귀사에서 제출한 일체의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 투자기업 개요

기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법인(주민)등록번호	
홈페이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요 생산품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없음	건설업명	

회 사 소 개

산 업 분 석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생산공장 요약 설명
<div data-bbox="151 1093 764 1205"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1 1272 764 1384"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1 1451 764 1563"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1 1630 764 174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 margin-bottom: 10px;"></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data-bbox="151 1809 764 192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50px;"></div>	

투자 설비 내역서

품명	규격(용량)	내용년수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용도)

□ 투자의 개요

기존 사업장 주소	본사		소유 / 임차
	공장		소유 / 임차
	연구소		소유 / 임차
투자지 주소			소유 / 임차

투자기간

토지매입계약체결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투자면적(단위 : m²)

구 분	부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투자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계	N	N + 1	N + 2	N + 3
계						
토지 매입가액						
설비투자 금액	소계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건설투자	
기계장비	
근로환경	

투자의 사유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단위 : 천원)						
투자금액	자기자본		외부조달		계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자기자본						
외부자본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참고사항						
부채비율	총부채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A)		유동부채 (B)		순유동자산 (A-B)	

고용 계획

고용계획(단위 : 명)						
구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투자 후(A+B)
		N* *신청년도	N+1	N+2	N+3	
계						
연구·개발						
사무·영업						
생산						
고용사유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직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영업 이익	이자 비용
N*-1 *신청년도							
N-2							
N-3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연 도	N*+1 *사업개시일	N+2	N+3	N+4	N+5	N+6	N+7	N+8
매출액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CAGR)		매출액		%		영업이익		%
사업성 전망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

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하동군 공고 제2022 - 34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하 동 군 수

1. 등록 및 폐기일 : 2022. 1. 6.
2. 등록 및 폐기사유 : 조직개편
3. 등록 및 폐기공인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등록	하동군 산단개발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하동군 산단개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폐기	하동군 산단조성과 분임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정사각형		
	하동군 산단조성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정사각형		

동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22-31호

하수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22. 01. 07.

하 동 군 수

1. 공공하수도 현황

○ 기본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 (m ³ /일)	처리공법	처리구역 (ha)	배제방식	사용개시일
동산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84	50m ³ /일	JSBR 공법	13.19	분류식	22.01.07.

○ 방류수질

(단위 : mg/L)

처리장	구 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동산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 계 수 질	10	25	10	20	2	3,000이하
	방 류 수 질	1.6	3.1	1.8	3.4	0.4	0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동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 횡천강 → 섬진강

2. 사용개시(공고)일

- 2022. 01. 07.

3. 기타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055-88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

하동군 공고 제2022-33호

하수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22. 01. 07.

하 동 군 수

1. 공공하수도 현황

○ 기본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 (m ³ /일)	처리공법	처리구역 (ha)	배제방식	사용개시일
지소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626-9	40m ³ /일	JSBR 공법	7.54	분류식	22.01.07.

○ 방류수질

(단위 : mg/L)

처리장	구 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지소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 계 수 질	10	25	10	40	4	3,000이하
	방 류 수 질	1.4	2.3	0.7	3.1	0.4	0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지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처리장 → 고전천 → 섬진강

2. 사용개시(공고)일

- 2021. 01. 07.

3. 기타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청 수도사업과 하수도담당(☎055-880-26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22-48호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제안 이유
 - 당직근무자 간 형평성 제고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 도모
 -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 및 서식 정비
3. 주요 내용
 - 당직 근무 후 대체휴무 부여대상 일·숙직 근무자로 확대(안 제5조)
 -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조문 정비(안 제4조~제20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월 30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 880-2164, FAX 880-2159, yeseul1570@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휴일·휴무토요일”을 “공휴일·토요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휴무토요일”을 “토요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숙직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숙직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본문 중 “재택숙직 근무를”을 “재택당직 근무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0분”을 “10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무부서로부터”를 “관리부서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야간사건”을 “당직근무 중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간민원”을 “당직민원”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전반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를 “전반·후반 근무시간 상관없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규정된 완장 또는”을 “규정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당직주무부서”를 “당직관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무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하동군 소속공무원의 <u>공휴일·휴무토요일</u>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공휴일·토요일</u> ----- ----- ----- -----</p>
<p>제4조(당직의 구분) ① (생략)</p> <p>② 일직은 <u>공휴일</u> 또는 <u>휴무토요일</u>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p> <p>③ (생략)</p>	<p>제4조(당직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토요일</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u>숙직근무자의 휴무</u>)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u>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u>숙직근무 종료시간</u>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을 포함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u>당직근무자의 휴무</u>) ----- ----- <u>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u>----- ----- ----- <u>당직근무</u> ----- ----- -----</p>
<p>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⑤ (생략)</p> <p>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된 직속기관, 읍·면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재택 <u>숙직근무</u>를 할 수 있다.</p> <p>⑦ (생략)</p>	<p>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당직근무</u>-----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3(대기근무) ① 제6조제6항에 따라 <u>재택숙직 근무</u>를 할 경우 재택숙직 근무자가 정상 근무시간 종료 후 18:00부터 19:00까지를 대기 근무시간으로 한다. 단, 동절기(11월·다음해 2월)에는 대기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의3(대기근무) ① ----- <u>재택당직 근무</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u>30분</u>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u>공휴일</u>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u>주무부서</u>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p>	<p>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 ----- <u>10분</u> ----- ----- <u>토요일 및 공휴일</u> ----- -----</p> <p>② ----- <u>관리부서</u> ----- ----- <u>로부터</u> ----- ----- ----- <u>토요일 및 공휴</u> -----</p>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
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4. (생 략)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앞뒤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
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생 략)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
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
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근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
의 보안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생 략)
-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필요
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
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
음 날 문서주관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당직사령의 비품)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근무일지
2.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일-----
-----.

③ -----
-----.

1. 당직근무 중 사건 ---
2. 당직민원 -----
3. 4. (현행과 같음)

제9조(교대근무) -----

-----.

1. ----- 전반·후반 근무시간 상관없이
-----.
2. (현행과 같음)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규정된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 5

----- 당직관리부서 -----

-----.

6. (현행과 같음)
- ② -----
----- 부서의 장 -----

-----.

<삭 제>